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① 계약 당사자

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,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.

② 계약기간

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.

③ 계약목적

계약목적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
④ 계약 시 구비서류

계약 시 구비서류	1)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2)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3)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
※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※ 제공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	

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
1.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와 비급여 비용(월한도액 초과비용)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%,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% 또는 9%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.

2020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

❖ 방문요양

(단위:원)

서비스시간	금액	본인부담금 (기본15%)	본인부담금 (감경9%)	본인부담금 (감경6%)	본인부담금 (기초0%)
방문요양서비스 30분	14,530	2,180	1,308	872	0
방문요양서비스 60분	22,310	3,347	2,008	1,339	0
방문요양서비스 90분	29,920	4,488	2,693	1,795	0
방문요양서비스 120분	37,780	5,667	3,400	2,267	0
방문요양서비스 150분	42,930	6,440	3,864	2,576	0
방문요양서비스 180분	47,460	7,119	4,271	2,848	0
방문요양서비스 210분	51,630	7,745	4,647	3,098	0
방문요양서비스 240분	55,490	8,324	4,994	3,329	0

❖ 방문목욕 1회당 수가표

(단위:원)

방문 목욕	방문목욕서비스 (방문당)	금액	본인부담금 (기본15%)	본인부담금 (감경9%)	본인부담금 (감경6%)	본인부담금 (기초0%)
1시간 이상	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1,930	6,290	3,774	2,516	0
40분 이상	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33,540	5,031	3,019	2,012	0

단) 방문요양의 경우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-야간은 표준수가의 20%를
가산하고,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-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
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%를 가산한다.

⑥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의
개념으로 해석한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가)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나)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- 다)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- 라)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2.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가)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- 나)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- 다)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
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
- 라)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⑦ 계약의 해제

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.

- 1.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
- 2.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- 3.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
- 4.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5.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,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.